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0년 8월 24일 부천시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10년 8월 24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164회 부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2010. 9. 3) 상정 및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교통관리과장 문병섭)

□ 제안이유

- 건축허가대상 도시형 생활주택에서도 주차장 완화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2255호, 2010. 7. 6. 공포·시행)의 개정으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시설물의 설치기준을 추가 하며,
- 행정안전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공동으로 자치단체의 경쟁제한적인 조례·규칙을 발굴하고 규제개혁을 추진함에 따라 공영주차장 관리 수탁자 선정방법을 개선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 선정방법 개선(안 제5조)

- 1) 부정한 방법 및 관리능력 부족으로 중도 해지된 자는 3년 이내에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2) 비영리 공익법인의 수탁방법을 “수의계약”을 “경쟁계약”으로 개선함.

나. 단지조성사업 등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 기준 신설(안 13조의2)

다.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개정(안 별표 2의 제2호, 제5호)

- 1)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세분화
 - 판매 및 영업시설 →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 업무시설(오피스텔을 제외한다), 공공용시설 중 방송국 → 업무시설(외국공관 및 오피스텔은 제외한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장례식장
- 2)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시설물의 설치기준 추가(안 별표 2의 제5호)
 -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르도록 함.

3. 주요질의 및 답변 요지

질 문	답 변
○ 중도해지 사유로 “부정한 방법이나 관리능력 부족”이란 조문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규정을 명시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가 필요함.	○ 대부분이 사업성이 없어서 본인이 포기하는 사항으로 이를 한정해서 3월 동안 입찰을 못하도록 정하는 것임.

4.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 없 음

나. 반대토론 : 없 음

5. 심사결과

○ 원안의결

6.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 부정한 방법 및 관리능력 부족으로 중도 해지된 자는 3년 이내에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 및 시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 등은 다음과 같다.

구분	선정방법	납부하여야 할 금액	납부방법
제1항제1호의 경우	시장이 정하는 방법	시장이 정하는 금액	시장이 정하는 방법
제1항제 1호이외의 비영리 공익법인	경쟁계약	제4항에 따른 산출금액 또는 제5항의 시장이 정하는 금액	시장이 정하는 방법
그 밖의 경우	경쟁계약	입찰가격	시장이 정하는 방법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 및 노외주차장의 규모) ① 법 제12조의 3의 규정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택지개발사업
- 2. 산업단지개발사업
- 3. 도시철도건설사업(「철도건설법」 제2조에 따른 철도건설사업 중 「도

시철도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도시철도에 준하여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목적으로 「도시철도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도시교통권역에서 철도를 건설하는 철도건설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4. 도시개발사업

②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단지조성사업 등에 관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경우 같은 법 제16조제4항(같은 법 제2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사업자가 통보받은 개선필요사항 등에 기재된 주차장의 연면적에서 부설주차장의 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면적 이상이어야 한다.

1. 도시철도건설사업(철도의 연장이 20킬로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의 경우: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한 주차 대수를 수용할 수 있는 면적
철도개설 5년 후 1개역의 1일 평균승차인원/210 × 철도연장(km)/8
2. 도시철도건설사업 외의 단지조성사업 등의 경우 : 사업부지면적의 0.6퍼센트

③ 단지조성사업 등에 관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아니할 경우의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해당 사업부지 면적의 0.6퍼센트 이상의 면적으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별표 2]

부설주차장설치기준(제17조 관련)

시설물	설치 기준
1. 위락시설	시설면적 70㎡당 1대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은 제외한다), <u>종교 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u> , 의료시설(정신병원·요양소 및 격리병원은 제외한다), 운동시설(골프장·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은 제외한다), 업무시설(<u>외국공관 및 오피스텔</u> 은 제외한다), <u>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장례식장</u>	시설면적 100㎡당 1대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호바목 및 사목을 제외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시설면적 134㎡당 1대
4.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시설면적 50㎡이상 134㎡이하의 경우에는 1대, 시설면적 134㎡초과의 경우에는 1대에 134㎡를 초과하는 87㎡당 1대를 더한 대수
5.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 업무 시설중 오피스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85㎡이하인 경우 전용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70㎡당 1대, 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는 경우 전용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65㎡당 1대로 한다. 다만, 전체 주차대수가 세대당 또는 호실당 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세대 또는 호실당 대 이상 •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다
6.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골프장 1홀당 15대 골프연습장 0.7타석당 1대 옥외수영장 정원 10명당 1대 관람장 정원 70명당 1대
7. 그밖의 건축물	시설면적 200㎡당 1대